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96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박해철 · 임미애 · 김정호

이광희 · 송옥주 · 김태선

박 정・전재수・전용기

김남희 • 진성준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 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 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

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3호),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노동기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제8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속근로기간"을 "계속노동기간"으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계속근로기간"을 "계속노동기간"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노동자의 계속노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계속근로기간"을 "계속노동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속근로기간"을 "계속노동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로기간"을 "노동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중 "계속근로기간"을 "계속노동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2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23조의14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7조제5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3조제7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4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96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⑨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5조의2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근로자</u> 퇴직	제1조(목적) <u>노동자</u>
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근로</u>	<u>노동</u>
<u>자</u> 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u> 가</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근로자</u> "란 「근로기준법」	1 <u>노동자</u> 「노동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	법
<u>자</u> 를 말한다.	- <u>노동자</u>
2. "사용자"란 <u>「근로기준법」</u>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	법
자를 말한다.	<u>.</u>
3. "임금"이란 <u>「근로기준법」</u>	3「노동기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법
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u>「근로기준</u>	4
법_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준법 <u></u>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	5
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	노동자

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6. · 7. (생략)
-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u>근로자</u>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 금제도를 말한다.
- 9. ~ 13. (생략)
-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 하의 <u>근로자</u>를 사용하는 사업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 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 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 여 <u>근로자</u>에게 급여를 지급하 는 제도를 말한다.

15. · 1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u>근로자</u> 제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C 및 /원레리 기수\
6. · 7. (현행과 같음) 8
노동자
-
9. ~ 13. (현행과 같음)
14
<u>노동자</u>
<u></u> -
<u>동자</u>
<u></u>
<u> </u>

노동자
15. • 16. (현행과 같음)
3조(적용범위) <u>노동자</u> -
<u></u>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저사용자는 퇴직하는 <u>근로자</u>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생략)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

-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 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 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세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u>노동자</u>
<u>계속</u>
<u>노동기간노동자</u>
<u>소정노동시간</u>
- <u>노동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u>노동</u>
자
<u>노동자</u>
<u></u> -
<u>동자노동자대</u>
<u> </u>
<u>.</u>
4

는 <u>근로자대표</u>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u>근로자</u>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근로자대표</u>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기 되지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 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 기자는 <u>근로자</u>가 퇴직한 경우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

- <u>도당사내표</u>
노동자
 노동
<u>자대표</u>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u>계속노동기간</u>
노동자
<u> </u>
②
<u>노동자</u>
<u>노동자</u>
노동자의 계속노
<u>동기간</u>
계속노
<u>동기간</u>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u>노동자</u>

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 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 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 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③ <u>근로자</u>가 제2항에 따라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근</u> <u>로자</u>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

- ①·② (생 략)
-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 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u>계속근로기간</u> 1

② <u></u>
<u>동자</u>
<u>노동자</u>
③ <u>노동자</u>
<u>노동</u>
<u> </u>
에 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② (현행과 같음)
3
 - 레스 i 드 i 기
<u>계속노동기간</u> -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 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 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 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 서 <u>근로를</u>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u>근</u> 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u>노동자대표</u>
 1.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입기간) ①
노동을
<u>.</u>
②
<u>দ</u>
<u>동기간</u>
제15조(급여수준)

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 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 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 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 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 2. (생략)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 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

<u>계속노동기</u>	<u> 간</u>	
 제16조(급여 ①		등)
<u>노동한</u> - 		
	탱과 같음)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② (생 략)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 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 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 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

<u>F</u>
동자대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노동자</u>
<u>.</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
성 등) ①
노동자

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 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 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 (생략)
-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 ④ (생 략)
 -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 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 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 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①
노동자대표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5)
노동자
<u>포 6 개</u> 대표
<u>시까</u>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u>근로자</u> 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	<u>노동자</u>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	
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	
다.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운영) ① ~ ③ (생	제도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	4
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	
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	
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	
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근로자</u> 를 대표하는 사람	2. <u>노동자</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 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및 <u>「근로복지</u> <u>기본법」</u>에 따라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u>근로자</u>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생략)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 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
1. (현행과 같음)
2
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1 도키레ㅍ
<u>노동자대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 담을 경감하고, <u>근로자</u>의 중소 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 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 ⑥ (생 략)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u>근로자</u>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u>근로자</u>의 동의를 받거나 <u>근</u>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u>근로자</u>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 야 한다.

<u>노동자</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
업에 대한 특례) ①
<u>노동자</u>
- <u>노동자</u> <u>노동</u>
저
<u>노동자</u>
②

-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1.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u>근로자</u> 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u>근</u> 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 <u>당</u> 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 2. ~ 4. (생략)
- 5. 그 밖에 <u>근로자</u>의 급여 수급 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생 략)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
 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u>근</u>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한다)
 - 7. (생략)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_ㄴ도기
, -	
<u>동자</u>	
,	
2. ~ 4. (현행과 같음)	
5 <u>노동자</u>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u>-</u> .	
1. ~ 5. (현행과 같음)	
6	
	노돗
자	
<u>^1</u>	
 7 <i>(</i> 처채司 가ㅇ\	
7. (현행과 같음)	ᆔ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	⑤
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	
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u>근로</u>	<u>노동자</u>
<u>자</u> 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	
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	
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
약의 체결) ① (생 략)	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	②
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u>근로자</u> 또는 가입자	<u>노동자</u>
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④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④
	·

(생 략)

-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2. 사용자가 <u>근로자</u>와 합의하여 <u>소정근로시간</u>을 1일 1시간 이 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함으로써 단축된 <u>소정근로시</u>간에 따라 <u>근로자</u>가 3개월 이

(현행과 같음)
⑤
<u>노동자</u>
<u>노동</u>
자대표
- <u>노동자</u>
1
<u>노동자</u>
<u>노동자</u>
2 <u>노동자</u>
- <u>소정노동시간</u>
<u>소정노동시</u>
<u>간</u> <u>노동자</u>

상 계속 <u>근로</u>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u>근</u>
로시간이 단축되어 <u>근로자</u>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생략)

-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 ⑥ (생 략)
 -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 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수있다.

⑧ (생 략)

-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생략)
 -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

노동
3
<u>7-</u>
<u>동시간노동자</u>
4. (현행과 같음)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노동자
<u>.</u>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u>근로자</u>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

- ③ (생 략)
- ④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②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 의 안정적 운영과 <u>근로자</u>의 수 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 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 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④ (생 략)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1. ~ 3. (현행과 같음)
4 <u>노동자</u>
 ③ (현행과 같음) ④
1 도기
<u>노동자</u>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노동자</u>
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노동자</u>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 (생략)
- 2. <u>근로자</u>가 퇴직할 때에 제17 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 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 한 자
- 3. 4. (생략)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7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 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 1의2. ~ 2. (생 략)
 -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u>근</u>

1. (현행과 같음)
2. <u>노동자</u>
3. • 4.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1
<u>노동자대표</u>
노동자
1의2. ~ 2. (현행과 같음)
3 <u>上</u>

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사용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 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2. ~ 4. (생 략)
- ② · ③ (생 략)

<u>동자</u>
제48조(과태료) ①
1
노동자
<u> </u>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